

법령개정해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해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총괄처장 김 재 용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가스사고방지와 규제정비를 위하여 1999.2.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어짐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은 '99.2.13~3.5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1999.6.30 대통령령 제16449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은 '99.3.11~3.31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999.7.1 산업자원부령 제75호로 부분 개정되었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되는 조문 수가 전체 21개조문의 반수 이상으로 전문개정을 택하여 16개조문으로 개정하였으며, 전문개정 상태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할 수 없어 시행령을 보는 국민의 편에서 정확한 개정사유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동 시행령의 개정해설을 하게 되었다.
현행과 개정·삭제·신설된 조문 수, 별표 수는 표 1과 같고, 신설·개정·삭제된 조문과 별표의 사유는 표 2, 3, 4와 같다.

【표 1】 조문 수 및 별표 수

(단위 : 개)

| 구 分 | 조 문 수 | | | | 별 표 수 | | | |
|-------|-------|-----|-----|-----|-------|-----|-----|-----|
| | 전 체 | 개 정 | 신 설 | 삭 제 | 전 체 | 개 정 | 신 설 | 삭 제 |
| 현 행 | 21 | 2 | 3 | 8 | 3 | 1 | 1 | 2 |
| 개 정 후 | 16 | - | - | - | 2 | - | - | - |

【표 2】 신설된 조문·별표와 사유

| 신설된 조문·별표 | 사유 |
|------------------------|---|
| 제7조(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대상지역) | 가스배관손상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지역외에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상가, 아파트 등의 재개발 등)과 도시가스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되어 사고시 인명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지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지역)에 대하여도 도로 및 공동주택단지내와 동일하게 굴착공사자가 가스배관의 매설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 제9조(준용규정) | 법 개정시 신설된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법제39조의5)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준용규정을 명시 |
| 제14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 최근 3년간 안전관리투자액이 사업개시년도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비슷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보다 낮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별표 2】 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 | 개정법령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관청별 부과금액차이에 의한 민원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도시가스사업자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 사용자, 시공자 또는 안전관리자 등 도시가스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나 개인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액수준으로 유지하고 -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되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함 |

【표 3】 개정된 조문·별표와 사유

| 신설된 조문·별표 | 사유 |
|--|--|
| 제3조(정기검사면제) 현행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최근 2년간 자체검사 실적 → 정기검사실적 | 법 개정으로 자체검사 실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검사면제기준을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적용토록 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함 |
| 제6조(안전관리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대 | 정기검사나 누설검사시 행정관청, 검사기관 등에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기 위함. 법 제29조에서 안전관리자의 대리기간은 30일 이내로 |

| 설정된 조문·별표 | 사유 |
|---|---|
| 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그 대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후임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문구를 수정 |
|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기술사 → 준치 • 고압가스기능장 → 가스기능장 • 가스기사 1급 → 가스기사 • 가스기사 2급·고압가스기계기능사 1급·고압가스화학기능사 1급·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 가스산업기사 • 고압가스기계기능사 2급·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고압가스취급기능사 2급 → 가스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자격종목의 명칭을 개정한 것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관길이 15km마다 1인 → 배관길이 15km를 기준으로 1인 | 배관안전점검원의 선임인원수는 배관길이 15km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가스배관매설지역의 교통난, 인구 및 건축물의 밀집정도 등 현장여건에 따라 10~60km 기준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건물에서 월사용량 4000m³초과 → 월사용예정량 4000m³초과 | 동일부지내 1인의 소유자가 소유한 여러개의 단일건물이 각각 월사용예정량 4000m ³ 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건물마다 선임하도록 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4000m ³ 이하인 여러개의 단일건물(합산한 경우는 4000m ³ 초과)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선임기준의 형평성이 없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동일부지내에서는 단일건물의 수와 관계없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전체 월사용예정량 4000m ³ 초과 기준으로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원의 수를 규정된 인원수보다 2명 감할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원 선임은 제조시설이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보다 2명을 감한 수를 선임도록 하여 그 부담을 감소시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수의 15%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음 | 배관의 전산화, 순찰장비의 현대화, 원격감시시스템 도입등 도시가스 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의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원의 채용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을 산업지원부장관고시 → 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량으로써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영업용은 1일 3시간 기준하여 30일간 중사용 가스량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함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해설

【표 4】 삭제된 조문·별표와 사유

| 삭제된 조문·별표 | 사유 |
|--|---|
| 제2조(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처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이관하고 삭제 |
| 제3조(시공자의 등록) | 시공자등록에 관한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정(96.12.30)됨에 따라 삭제 |
| 제4조(시공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 | 시공자의 등록관리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 |
| 제7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법 제27조의2(안전성평가등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7조의3(안전성평가 등) | 상 동 |
| 제9조의3(전기부식방지를 위한 협의) | 법 제30조의7(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9조의 4(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 상 동 |
| 제10조(공공용 토지사용) | 법 제31조(공공용 토지의 사용)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별표 1】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과금액 |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처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 |
| 【별표 2】 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과금액 | 제4조의 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규정폐지에 따라 삭제 |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각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동법에서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조문에 대한 개정사유를 중심으로 개정해설을 하였다. 현행과 개정·삭제·신설된 조문 수, 별표 수는 표 5와 같고, 신설·개정·삭제된 조문과 별표의 사유는 표 6, 7과 같다.

【표 5】 조문 수 및 별표 수

(단위 : 개)

| 구 分 | 조 문 수 | | | | 별 표 수 | | | |
|-------|-------|-----|-----|-----|-------|-----|-----|-----|
| | 전 체 | 개 정 | 신 설 | 삭 제 | 전 체 | 개 정 | 신 설 | 삭 제 |
| 현 행 | 64 | 6 | 26 | 19 | 17 | 2 | 11 | 3 |
| 개 정 후 | 56 | - | - | - | 16 | - | - | - |

【표 6】 신설된 조문·별표와 사유

| 신설된 조문·별표 | 사 유 |
|---------------------------------|--|
| 제10조의2(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이관 |
| 제10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 상 동 |
| 제10조의4(과징금 부과 및 납부) | 상 동 |
|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 설치신고 절차 관련조문을 제11조제4항에서 이기하여 조를 신설 |
|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대상등) 제5항 |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책임감리가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확인 |
| 제58조의2(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굴착공사시행자 외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사항 규정 및 가스배관설도면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정확한 배관정보 제공 |
|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대상과 절차) |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 |
| 제63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공사계획승인 및 신고 기준을 정하여 그 절차를 명확히 함 |
| 제62조의4(공사의 기술검토) |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준하도록 함 |
|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 법 개정으로 법 제39조의5 준용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적용 규정을 명시 |
| 제62조의6(준용규정) | 상 동 |
| 제65조2(과태료의 징수절차)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특칙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관련조문 신설 |
| 【별표 1의2】 행정처분기준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신설 |
| 【별표 1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1일과징금액은 '97년도 도시가스사업자의 총매출액대비 연간 평균 순이익 금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출 |
| 【별표 17의2】 보험금액 |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표 7】 개정된 조문·별표와 사유

| 신설된 조문·별표 | 사 유 |
|---|---|
| 제2조(정의) 가스사용시설인 내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공급관을 명시 | 사용자공급관의 안전관리는 공급자가 그 시설의 개선이나 보수는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도시가스사업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해설

| 신설된 조문·별표 | 사유 |
|--|---|
|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 법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가 삭제되고 법 제7조 상속·합병등의 승계와 통합에 따른 문구 조정 |
| 제10조(사업의 휴지·폐지등의 허가신고 등) 도시가스사업을 휴·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휴·폐 지 예정일 30일이전에 허가관청에 서류 제출 | 사업의 휴·폐지에 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개정 됨에 따른 휴·폐지 기간 등의 절차를 정함 |
| 제12조(공사계획 승인신청등)제4항 공사계획 승인·신고(변경포함)를 받은 때에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 받은 때에 대장에 기 록하고 필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사에 통보 |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지역산업분야 서 식법제화 통일을 기하기 위함 |
| 제20조(시공기록 등의 보존방법) - 제1항 시공자는 공사시공기록 및 공사완공도면을 작 성·보존 → 온수보일러·온수기 설치시에는 완 공도면 대신 사진 - 제4항 공사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사본을 교부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7일 이내 제출 | - 완공도면작성에 따른 시공자의 불편해소를 위 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는 시공내용확인이 가 능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 도시가스사업자별 완공도면 제출절차를 정함 |
|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대상등) ◇ 제1항 - 시공감리 제외대상을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 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 경 50밀리미터 이하 저압공급관 →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에서 증감하여 변 경하는 공사 →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미만 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 -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가스수요가로 분기되는 관 경 50mm 이하의 저압배관에 대하여도 연립·다 세대주택 등과 동일하게 시공감리를 면제함 별표 2 및 3에서 배관을 20m미만으로 변경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승인 및 신고대상에서 제 외함에 따라 문구정리 |
| 제23조(시공감리·완성검사)제4항 시공감리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 설설치자의 배관 포함 | 도시가스사업자외의 사업자 공급시설에 대하여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과 동일하게 시공 감리를 받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함 |
| 제25조(정기검사)제3항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 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mm이하 저압배관 →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 제21조제1항 시공감리대상 변경에 따름 |
| 제27조(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 면제 서류 제출시 첨부하는 최근 2년간 행한 자체검사 실적 → 정기검사 수검실적 | 법 개정으로 자체검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기 검사 수검실적을 정기검사면제 기준으로 정함 |

| 신설된 조문·별표 | 사유 |
|---|--|
|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확인·평가는 매 5년마다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시 |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생략함 |
| 제52조(가스배관설상황조사) → 가스배관설상황확인으로 조문 제목 변경 및 매설상황확인의뢰서에 공사위치도 첨부 | 가스배관설여부 확인절차 및 첨부서류를 명료화하여 문구수정 |
| 【별표 1】 보호시설(제1종) -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학원, 병원 →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학원, 병원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수용능력 20인이상 건축물 →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 | - 유아 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이 영유아보육법(1991.1.14 제정)으로 흡수·통합되어 어린이집 및 놀이방으로 변경됨에 따른 문구수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
| 【별표 2】 공사계획승인대상 공사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소외 배관중 배관의 길이 10분의 1이내 증감 변경공사 제외 → 10분의 1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 문구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m미만 변경은 공사계획 승인이 면제됨을 명확히 함 |
| 【별표 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공사계획신고를 한 사업소 외의 배관으로 당해 공사의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 10분의 10이내에서 증감 변경공사 →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 문구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m 미만 변경은 공사계획 신고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 【별표 5】 3. 배관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판 및 가스누출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공 설치 → 보호판 설치 | 검지공 설치기준 삭제에 따른 문구 조정 |
| 【별표 6】 8. 배관 -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은 보호관, 보호판으로 0.3m이상의 깊이 유지 → 단서 신설.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내 배관설치하는 경우 제외(별표 7도 적용) | - 보호관, 보호판을 설치하더라도 0.3m이상의 매설심도가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내 설치한 경우 매설깊이 제한을 제외함 |
| - 가스차단장치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 50mm이상의 것은 차단장치 설치할 것 → 60mm이상의 것은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스사용자의 토지경계내 가까운 곳에 설치 | - 분기점에서 입상차단밸브까지 거리가 10m 미만 이므로 추가로 가스차단장치 설치하는 종복부 담을 완화하고 토지경계 내 가까운 곳에 차단밸브 설치로 시공에 따른 민원해소 |
| - 전기시설물과의 거리 배관이음매와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한 이격거리와 동일하 |

| 신설된 조문·별표 | 사유 |
|---|--|
| 거리는 15cm → 30cm(별표 7도 동일 적용) | 계 함 |
| 【별표 1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 자체검사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 자율적인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법 개정으로 자체검사제도 폐지에 따른 문구조정 |
| 【별표 14】 안전교육실시방법 - 정기교육의 교육기간 안전관리대행업무 기술인력으로 신규증사시 1회 → 신규증사 후 6월 이내 - 시공관리자·시공자 연 1회 → 2년에 1회 | - 신규증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하여 개별 자격자의 불이익구제 - 현행 안전관리자의 교육주기와의 평형성 유지로 기간 조절 |

【표 8】 삭제된 조문·별표와 사유

| 신설된 조문·별표 | 사유 |
|--|--|
| 제7조(사업개시신고서) | 법 제5조의 사업개시의 신고의무를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8조(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인가등) | 법 제6조의 사업의 양도·양수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16조(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 법 제12조의 시공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19조(시공자의 자체검사) | 법 제13조의 시공자의 자체검사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60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법 제30조의 7의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61조(타인토지의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 법 제32조 및 제38조의 타인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제62조(조정신청의 처리절차) | 법 제32조 및 제38조의 타인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별표 12】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장비 | 법 제27조제4항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장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별표 13】 안전관리대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 제27조제1항의 시설의 안전유지 및 자체검사실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 【별표 14】 안전교육실시방법 제4호 비고중 8 양성교육 유효기간 5년, 매 5년마다 재교육실시 → 폐지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가스관련양성교육, 재교육도 함께 폐지 |
| 【별표 15】 자체안전교육계획의 작성기준 | 법 제30조의2 자체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